

## 전북개발공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<b>법 제9조 제1항 제1호</b>	<b>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)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</b>
----------------------	--

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, 금융 거래자료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
- 「민원사무처리법」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
- 「통계법」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
-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
  -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(국세기본법 제81조의10)
  -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(「변호사법」제26조,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52조의6)
- 기타 법률의 취지,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

<b>법 제9조 제1항 제2호</b>	<b>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b>
----------------------	--

- 군시설 건설공사(건축설계,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등) 및 보상관련 정보
- 보안정책, 을지연습, 직장예비군·민방위대 편성표, 비밀취급인가자 명단, 보안정책 등 비밀·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
-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·사이버 테러 등 공사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- 국가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

<b>법 제9조 제1항 제3호</b>	<b>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b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
  - 방재,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, 사람의 생명, 생활,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
  -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-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, 위험물의 저장위치,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·구조·경비에 관한 정보
- 위법,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
-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·변조,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- 집합건물이나 관공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의 설계도면(단면도, 입면도, 구조도, 설비도 등)
- 보상에 관한 사항(보상가액, 보상물건, 보상금수령자 등) ※단, 보상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<b>법 제9조 제1항 제4호</b>	<b>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(矯正)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</b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- 재판과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판결전 재판기록,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
-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
-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
- 「형사소송법」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

<b>법 제9조 제1항 제5호</b>	<b>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.</b> <b>※ 다만,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</b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감사·감독·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
  - 신기술·신자재사용에 대한 개선요구, 통보사항(단, 공사채택시 까지)
- 감사결과심의회위원회 회의록,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,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※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
- 불시 감사·조사·단속·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
- 감사관련 정보, 문답서·확인서 등 조사활동중 생산된 문서,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지시서, 부조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
- 
-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, 신자재 채택과 관련하여 검토중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·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  - 직원임용시험, 중개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문제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.
  - 입찰공고전 발주관련 정보, 개찰전 개찰관련 업무자료, 설계용역 시행과 관련한 설계용역비 산출내역, 설계 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입찰,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  -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    -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,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(입찰참가신청서, 첨부서류, 유자격자 명부 등)
    -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(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)
    - 설계·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(설계·시공상의 노하우, 건축물의 설계도 등)
  -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
  - 상가·대지 예가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,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
  - 각종 법령,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, 정부·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, 회의결과, 협의자료,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  - 공사의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및 건설사업 승인 업무에 따른 중앙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 업무 관련 정보
  -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, 진행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,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
  - 수립중인 장, 단기 도시정비 시행계획,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후보지(예정지) 조사 및 선정계획, 투자사업타당성(사업성)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
  -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, 법인 등의 사업계획,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
  -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,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
  - 인사관련 정보
    - 직원 등의 임면, 복무, 급여,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
      - 직원채용, 승진, 종합근무(인사)평정, 다면평가,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
      - 인사기록카드, 인사위원회 관련자료, 징계·상훈관련자료, 인사제도 검토자료
      - 급여관련 개인별 기본자료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
      - 퇴직금관련,사내복지기금대출관련,주거안정지원관련 개인별 기본자료
        - ※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, 포상 등의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
    - 임면,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
      - ※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,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·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
  -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등 정보
    -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내부의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자료(내부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,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)
    -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(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,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)
-

- 공사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(공공기관 내부의 회의, 의견 교환기록)
- 공사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(업무의 기획·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)
-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·검토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

<b>법 제9조 제1항 제6호</b>	<p><b>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b></p> <p><b>※ 다만,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</b></p> <p><b>가.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</b></p> <p><b>나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</b></p> <p><b>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</b></p> <p><b>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</b></p> <p><b>마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</b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- 용지보상, 수탁사업, 용지분양, 토지거래통계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
  - 타인의 보상금 산정 내역 및 보상금액,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 등(재결서, 감정평가서 등)
  - 호적기재사항(이름,성별), 경력활동사항(학력,직업), 심신관련사항(건강상담표), 재산상황(채권·채무관련 정보, 납세증명서) 등
  - 보상과 관련한 계약서, 보상관련 서류, 재결서, 감정평가서 등 개인(법인)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
  - 개인·법인의 토지거래내역
  - 개인별 공급토지 명세서, 택지분양내역, 주택·상가·대지 계약자 내역 및 명의변경, 대출자 내역, 용지보상내역, 보상대상자 정보(보상대상자, 이해관계인, 조합원,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) 등
  -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, 적격심사평가 관련서류, 계약서 및 첨부서류, 입찰서, 내역서 등 입찰 관련 자료의 개인정보
  - 공사의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등 다양한 명칭의 형태로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  - 자체 청렴도 조사관련 사항 및 감사결과 등에 관한 개인정보
  -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응모서류, 공사 투자자문단 인적사항
-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.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. 다만,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특정 직원의 집 주소·집 전화번호·학력·주민등록번호·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.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인사교류 신청, 채용후보자 명부, 교육훈련관리, 징계심의·의결·결정통지, 신원조사,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·신용·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. 다만,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각종 시험원서·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·학력·주소 등 개인정보
-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.
- ※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
  -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(부동산 등기부등본)
  -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(심의회 등 위원명부, 수상자 명단)
  -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(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)
- ※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
  -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

<b>법 제9조 제1항 제7호</b>	<p><b>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b></p> <p>※ 다만,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.</p> <p><b>가.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(危害)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</b></p> <p><b>나.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</b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-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
  - 중장기 재무계획,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, PMS 정기 추정자료 등 손익추정 관련자료
  -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사업계획,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(LOI, MOU 본협약서 등)
  - 주택·대지·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(준공원가)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
  -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
  - 용지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 방침
  -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, 제비용률 및 할인을 산정내역, 수지분석자료. 단, 조성공개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,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
  - 각종 용역·공사관련 발주서류, 착수서류, 기성서류, 설계변경, 준공서류
  - 입찰지정(예정)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, 선정관련 제출자료(제안서 평가 등)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, 기술평가 결과, 과업수행 결과
  - 턴키(대안)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
  - 친환경 건축물인정 신청자료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,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, 심의내용에 관련된 정보
  - 위탁연구 수행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된 정보
  - 주택시장 정책, 동향등 마케팅 조사, 분석 등에 관련된 정보와 판매촉진 및 홍보전략 관련 정보,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영업관련 정보, 심사서류 및 심사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
  -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(사장 또는 지역(사업)본부장의 업무추진비 총 건수 및 총액의 공개는 가능)

- 법인·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
  - 경영방침, 신용, 경리,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
  -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-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
- 용지(보상, 공급)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
  - ※ 공개가능한 법인 등 정보
  -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
    - 약해,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
  - 위법·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
    -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

**법 제9조  
제1항  
제8호**

**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**

- 정부의 토지·주택 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
- 운영계획 수립 자료, 투타심 심의자료,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 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,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
- 택지개발사업지구,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,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지정고시 전의 관련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
-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, 지구지정제안,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이전의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경기 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
-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및 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공공토지비축계획 수립을 위해 수집된 토지수급현황 및 비축대상지 선정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